

증여세와 과세 대상

이진웅 <공인회계사>

1. 머리말

과거에는 증여세라고 하면 일반 대중과는 거리가 먼 세금이라고 생각했었으나 요즘 들어서는 점차 익숙해지는 경향이 있다. 조금 젊어서 집을 샀다든가, 부녀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세무서로부터 증여세 우편 질문서 즉, 자금출처 조사 질문서를 받고 어떻게 해야 증여세를 내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며 또한 막연히 부모 명의의 상가나 임야 등 부동산을 상속세가 무서워서 미리 아들 명의로 이전했다니 증여세가 고지되었다든지 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가고 있다. 특히 90년 이후부터 정부의 과표 현실화 정책으로 상당할 정도로 시가에 접근하여 책정되고 있는 공시지가나 국세청의 기준시가 덕분에 그에 따라 과세되는 증여세 역시 상당한 금액으로 계산되어 막연한 생각으로 부동산등기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증여세에 시달리게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2. 증여에 관한 기초사항

증여란 다른 사람에게 무상이나 또는 시가보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재산을 팔거나, 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재산을 사는 것을 말한다. 증여세는 이런 증여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수증자(즉, 증여를 받아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람) 별로 나누어서 과세된다.

만약 같은 사람에게서 과거 5년간 여러번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증여받은 금액이 1천만원을 넘는다면 과거에 받았던 증여금액도 합산하여 과세한다.

다른 세금과 달리 증여세는 재산의 명의자를 소유자로 보아서 과세하는 것이 특이하다. 예를 들어 어떤 사정으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 개서를 요하는 재산(예를 들어 부동산 등)을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사람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서 증여세가 부과된다.

또한 부모와 자녀간이나 부부간에 재산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대가의 지급이 있었는지 유무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과세한다.

일반적으로 증여사실은 세무서가 알기 힘들기 때문에 미성년자나 부녀자들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등록 또는 등기한 시점에 자금 출처를 조사받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본인이 평소에 세금을 납부하였던 소득이나 본인 명의의 부동산등을 양도하여 자금이 있던 사람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자금 출처를 입증할 수 없는 사람은 한꺼번에 많은 액수의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한편,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이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이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등이 그 사람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증자이다. 그러나,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한 기술적인 측면에서 조세를 수증자에게 부과하기 힘들다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증여자(재산을 증여한 사람)에게 연대납부 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한다.

수증자의 주소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국내외에서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며 수증자의 주소가 국내에 없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의 재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3. 증여세의 과세 대상

증여세의 과세 표준은 증여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합계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하여 계산된다. 다음에서 열거하는 경우는 세무상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차 증여재산

과거 5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으로 그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 5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



세한다. 그러나 이미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이는 공제한다.

2) 신탁에 따른 이익

다른 사람이 위탁한 신탁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한 경우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제3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한 재산

토지, 건물, 주식 등의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실질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명의신탁이나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를 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한편,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의 실질적인 대가를 받지 않는 것이므로 명의자에게 증여세는 과세되거나 실질 소유자에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4) 보험금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실제적인 보험료 납입자와 후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다를 때에는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보험금을 받는 사람에게 보험금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5) 부부간 또는 부자간의 재산의 양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재산의 양도는 실제적으로 유상으로 매매된 경우라도 무조건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후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에 양도한 사람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초의 양도자가 직접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특수관계자라 함은 양도

자의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친족, 양도자의 친족이나 그 친족의 배우자, 양도자의 4촌 이내의 친족, 양도자의 친지.

6) 저가양도 또는 고가양수시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또는 평가액의 70%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 또는 평가액의 130%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재산의 매매가격과 시가와와의 차액을 증여로 본다.

7) 채무면제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가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경우에도 이를 증여로 본다.

8) 합병, 증자시의 증여의제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합병함으로써 인하여 그 주주가 현저한 이익을 받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자기의 지분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는 경우에 배정된 신주의 납입액과 해당주식의 평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로 본다.

9) 부담부 증여

원래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한 재산의 평가액에서 그 재산에 부수되는 채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간의 이런 부채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수증자가 이 부채를 인수하여도 이를 증여 재산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